

해경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(훈령) 제정 계획

- ◆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‘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’를 두고,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어있어, 관련 훈령을 제정

1 제정 배경

-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우리청에 ‘전문용어표준화*협의회’를 두고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훈령 제정 필요

* 전문용어표준화 : 정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국어 순화

국어기본법 제17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.

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,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- 각 중앙행정기관*들은 ‘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’(훈령)을 제정하는 등 국어기본법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에 노력을 경주

* 법에 따른 제정 대상 기관 : 52개 중앙행정기관(18부처 5처 17청 / 2원 4실 6위원회)

2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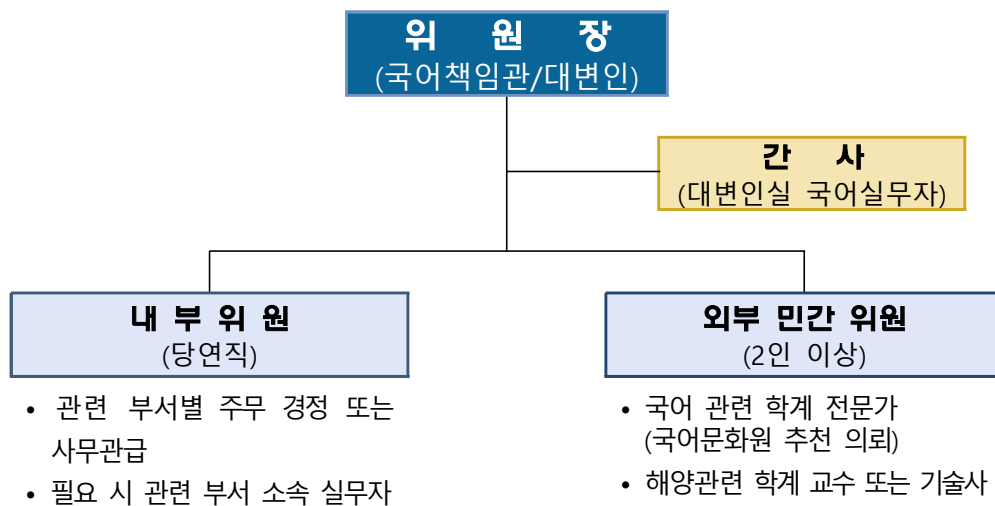
○ 훈령 제명: 「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」

○ 제정 주요내용

구 분	제 정 내 용
목 적	•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설치 법적근거 및 목적
구 성	• 위원장 및 위원 수
위원 위촉 및 해촉	• 민간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해촉 사유
기 능	• 전문용어 심의사항 규정
전문소위원회	• 협의회에 상정될 안전에 대하여 토론 및 검토할 수 있는 조직 규정, 관련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(재량)
간 사	• 협의회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
협조요청	• 필요시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 협조 요청
수당 등	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 및 소요경비 지급
운영세칙	•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 협의회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

■ 협의회 조직도

(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20인 이하)



3 향후계획

- **(절 차)** 행정규칙에 대한 법무계의 자체심사 완료 후 위원회에 안건 제출 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컨설팅 실시하는 등 6월 중 완료



- 예비 검토 '22. 4월
- 전부서 의견조회(10일간) '22. 5월
- 사전규제 심사 '22. 5월
- ※ 본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
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예고 생략
- 본 심사 의뢰 '22. 5월
- 사전컨설팅 '22. 5월
- 행정규칙(훈령) 발령 '20. 6월